

복수전공 시행세칙

제 1 조 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51조에 의거하여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수강범위)

본교 전 학과에서 복수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제 3 조 (신청자격및절차)

- ① 누적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B0(3.0)이상인 자는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로 지정된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복수전공 학과장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학생은 복수전공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④ 복수전공 학과장은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⑤ 복수전공은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.
- ⑥ 복수전공 신청자는 주전공의 졸업기준 충족 후, 복수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최대 2년에 한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12.12.3.>
- ⑦ 동일 학부 내 세부전공 간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. <신설 2016.07.21.>

제 4 조 (이수학점) <개정 2016.12.20>

- ① 복수전공 신청자는 복수전공학과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에서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 다만, 복수전공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교과목을 필수로 지정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0>
- ② 복수전공 교과목이 주전공 교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- ③ 복수전공 중도포기자 및 복수전공 자격미달자가 복수전공으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 선택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. 단, 복수전공 중도포기자 및 복수전공 자격미달자가 부전공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승인을 통해 부전공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- ④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C0(2.0)이상이어야 한다

제 5 조 (학위수여)

- ① 복수전공을 위한 소정의 전 과정을 마친 자는 복수전공 자격신청서를 복수전공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정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복수전공 학과장은 사정결과를 주전공 학과장에게 통보하여 부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9.12.29>
- ③ 복수전공 사정에 합격한 자에게는 복수의 학위명을 병행표기한 학위를 수여한다.
- ④ 복수전공 사정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주전공의 학위만을 수여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경과조치) 제4조(이수학점) ①항은 2017학번부터 적용한다. 단, 2016년 이전 학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 세칙을 적용하며, 2019학년도부터는 개정된 세칙에 따라 일괄 적용한다. <개정 2018.12.13>

(2) (시행일)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